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이연희·한민수·허종식

이정문 · 정성호 · 문진석

김남희 • 서영석 • 허 영

최민희 · 김정호 · 이병진

서미화 · 김윤덕 · 문금주

민형배 • 박수현 • 박 정

민홍철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).

법률 제 호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 진흥원"을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, "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"를 "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「산업디자인진 흥법」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디자인 개발 지원)	제10조의2(디자인 개발 지원) ①
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11조	중소벤처기업부장관
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	
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	
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
	<u>할 수 있다</u> .
<u> <신 설></u>	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「산업디
	자인진흥법」 제11조에 따른 한
	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
	<u>다.</u>